

# 조건부 선별급여 「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」 공고 개정 내용

## □ 배경 및 목적

- 조건부 선별급여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승인기관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\*로 운영되고 있음

※ 「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」: 승인기관의 실시 조건 및 임상자료 제출 등

- 최근 상위법령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(제14조의2)이 변경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공고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◆ 「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」 ( 2021. 4. 1. 시행) 개정  
· 주요 내용 중 심평원장 공고와 관련된 사항: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, 급여평가위원회 폐지

## □ 관련 법령

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, 제42조의2

-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,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,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

나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

- 적합성평가위원회 설치 등
- 선별급여 지정·실시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

다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

- 선별급여 실시기관 관리

## □ 공고 개정사항

구분		현행	개정
공통	관련위원회 변경	급여평가위원회 심의	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

\* 조건부 선별급여(3항목): 경피적 대동맥판삼입(TAVI),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,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